

미국의 공립학교와 종교교육

김 용 표
(동국대학교)

I.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논쟁

미국 공교육제도의 주요 문제의 하나는 종교적 가치와 세속적 학교 교육 이념과의 논쟁이었다. 미국은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이므로 학교 교육은 다종교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적 통합 이념을 제시해야 하는 딜레마를 지녀왔다. 미국의 공교육은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민주 시민의 덕과 과학적 사고, 기술 교육과 인지적 지식 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미국이라는 다원사회의 여러 신념과 진리 주장의 갈등도 이러한 보통 학교(the Common school) 교육의 통합 이념에 의해 조정되고 여과되어 미국 국민의 공통된 정신을 추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정신부터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으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특히 기독교 교육의 실시 여부 문제는 늘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첫째, 미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와 국교설립의 조항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사립 학교에서는 독자적인 종교교육을 할 수 있으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민의 정서는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유태인과 카톨릭교도, 그리고 아시아 및

세계 각 민족의 이민 증가로 종교교육 문제는 더 복잡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II.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세 입장

미국 공교육제도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¹⁾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학교교육에서의 어떠한 차원의 종교교육도 금지해야 한다는 종교교육 반대론이다. 둘째는 비종파적인 경신(敬神)교육의 부분적 허용론이다. 셋째는 특정 종파교육이 아닌 '종교적 교육'으로 인류 '공동의 신앙(common faith)'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 종교교육 분리론

공교육 기관은 종교와 완전히 분리된 세속적 교육기관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이론은 윌리엄 해리스(William Harris, 1835-1908)에 의해 주창되었다. 해리스는 1868년부터 세인트 루이스 주의 교육감으로 12년간 재직하면서 공립학교 체제의 모델을 확립하였다. 그 후 미연방 정부의 교육 장관으로(1889-1906) 재직했다. 그는 학교의 기능은 교회나 종교 공동체의 기능과 다르다는 인식에서 공교육과 종교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였다.

-
- 1) 미국의 공교육제도와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Robert L Church(1976), *Church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New York: Macmillian); Moore, Mary Elizabeth M. (1995). The myth of objectivity in public education: Toward the intersubjectivity teaching of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Vol. 90-2*; Dale, Robert L. Van (1985), Religious values and secular humanism in schools, *Religious Education Vol. 80-1*. Pfeffer, Leo(1967), *Church, state, and freedom*. Boston: Rev & Enl.; Allen, Mathews F.(1985).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Disability and possibility, *Religious Education Vol. 80-1*; Nolan, Elizabeth H.(1992),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Dealing with diversity in spiritual traditions at the Chalkface. *Religious Education Vol. 87-4*. Yab, Iris M.(1993). Teaching in the language of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Vol. 88-2*.

해리스는 헤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육사상가였다. 교육은 개인이 그 자신의 자유를 얻으려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헤겔의 이론을 원용하여, 해리스는 교육이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작용이며 인간성을 해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전영배, 1990: 80). 국가의 공교육과 종교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의 신장을 위해 분리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편적 사회적 도덕교육과 종교적 신조 교육은 서로 대치된다. 둘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이념은 특정 권위에의 존중과 숭배를 가르치는 종교적 교권주의와 배치된다. 셋째, 종교의 교리는 학교교육에서 가르치는 실증적 보편적 진리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어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유럽에서의 종교와 국가의 불분리정책은 종교의 타락이 국가의 약화를 가져 왔던 역사가 있었음도 상기해야 한다. 다섯째, 비종파적 종교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종파의 종교의식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종교교육과 종파교육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전영배, 1990: 78-81).

해리스의 입장은 모든 종교는 특정 진리의 절대성 주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속성이 있음을 잘 간파하고, 이의 교육적 적용이 무리한 일임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앙적 감정한 이론을 교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이다. 학교 교육은 특정 교리나 도그마가 아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가르쳐야 할 명제가 있다. 그러므로 종교적 권위나 신앙에 기초한 이론을 논증과 보편성의 추구를 그 특성으로 하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존 셸리(John Sealey)가 “교육의 궁극적 기반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며 선입견이나 교조적 사고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은 가변성이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좌우된다”(Sealey, 1985: 21)라 한 정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의 목적은 명백하게 교화와 다른 차원에 있으며 학교교육은 자유로운 지성의 개방을 전제로 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은 공공의 성격이 있으므로 특정 종교계층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옹호하는 교육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비종파적 ‘하늘의 종교’ 교육론

비종파적 종교교육 허용론을 주장한 호레이스 만(Horace Mann, 1796-1859)은 1837년 메사추세츠주의 교육감으로 일하면서 미국 공교육의 정착에 기여한 교육행정가였다. 호레이스 만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자연주의 교육관에 입각한 인격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에 주력하였다(이충원, 1985: 25; 전영배, 1990: 65-78). 종교교육 문제에 있어서 그는 특정 종파 교육이나 신조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였다. 종교 교리 교육은 학생에게 적개심이나 소외감을 심어 주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학교는 일반적 지식을 전달해 주는 공동의 플랫폼이며 종파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이다. 그러나 호레이스 만은 인간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하였으므로 종파성을 떠난 종교적 교육에는 찬성하였고 그 실천 방법에 대해 고심하였다. 그는 종교와 도덕적 훈련은 교육에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는 신에 대한 경건한 마음은 자연 윤리에 기초한 일신론적인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종교적 경건성(piety)을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함을 주장하였다. 종교교육 내용에는 인류의 종교에 대한 위대한 공동의 진리를 다 포함시킬 수 있으나, 공동진리는 성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서는 주석 없이 읽게 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말고 다만 “하늘의 종교(the religion of Heaven)”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보편주의자(universalism)라고 볼 수 있다. 호레스 만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그의 보편주의도 또 다른 종파주의 종교의 일종이라고 공격하였다. 여기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양심과 의무, 진리가 나를 복종시켜 부적절한 반대와 맞서게 하였다. 종파적 교리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무디게 한다. 학생들에게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게해서는 아니 된다. 아동 스스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기까지는 어른들의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다만 하늘의 종교를 가르쳐야한다”(McCuskey, 1958: 266, 전영배, 1990: 71). 호레이스 만은 이성적 종교관과 다소의 다원적인 종교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종파주의를 초월한 인류에의 선양이 바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이며 무종교 주의나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3. '공동의 신앙' 교육론

마지막으로 존 듀이(John Dewey, 1857-1952)는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반대론과 비종파적 종교교육 허용론 등의 이원론적 주장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경험적 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제3의 종교교육 이론을 제안하였다.²⁾

존 듀이는 종래의 초월적 존재로서의 신관과 기독교의 절대적 종교관과 예수의 유일회적 화육사상을 하나의 가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듀이가 인정한 종교적 경험은 절대적 사랑, 자연에 대한 경외감,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나 경건한 이타적 생활 태도 등의 종교의 실용적인 요소였다. 존 듀이가 지향한 학교교육의 목적은 인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력의 증진에 있었다. 교화교육(Indoctrination)은 (a)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의 저해, (b) 개인의 신앙의 자유 침해, (c) 독선적 편견 초래로 인간적 대화와 화해의 저해하는 등의 비교육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종교적 도그마 교육은 학교에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경험된 실재만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종교적 교육에 적용시킨 것이 듀이의 공동의 신앙론이다.

존 듀이는 『공동의 신앙(A Common Faith)』이라는 저술에서 종교의 개념을 실명사로서의 '종교(a religion)'와 형용사로서의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을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듀이의 '종교'는 융의 '종파'라는 개념에 유사하며, '종교적임'의 개념은 융(Carl G. Jung)의 '종교'의 개념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³⁾

2) 듀이의 종교관에 대해서는, 박선영(1978). John Dewey의 종교교육관, **사대논총 1**; 박봉목(1982), John Dewey의 종교론, 존 듀이와 Pragmatism, 한국존듀이연구회; 임한영(1968), 듀이의 교육사상연구, 민중서관. 등 참조.

3) 융은 종교(Religion)의 개념을 종파(Konfession)와 구분하여 해석한다. 융은 “종파를 기존의 불교, 기독교, 도교, 힌두교와 같이 하나의 조직된 공동체로의 정형화된 신앙, 또는 일정한 윤리적 행동양식을 집단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며 종교체험이 교의와 도그마 형태로 변화한 것”(Jung, 1961: vol.11, 228)으로 규정했다. 이에 반하여 종교란 어떤 정형화된 도그마의 신앙이 아닌 “어떤 신성한 감정이나 표상이나 상징을 주의 깊고 성실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하나의 자세이며 입장을 의미하는 것이다”(Jung, 1961: vol.11, 4). 종교의 라틴어 어의인 'religio'의 본래 개념과 같이 종교란 어떤 동적인 요소들에 대한 주의 깊은 고려와 관조의 태도이다. 이 동적인 요소란 힘, 정령, 신령, 신들, 법, 이념,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간

듀이의 '종교적임'의 개념은 개개의 종교에서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것을 제거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근본적인 경험의 질로서의 일종의 태도, 경험, 견해 등을 지칭한다. 이 경험은 특정 '종교' 아닌 '종교적인 것'으로 인간의 종교성(religiosity), 즉 '이상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에 '종교'는 제도화된 조직을 지닌 특정 신념과 실천 체계이다.⁴⁾ 이러한 의미의 종교교육은 자유로운 지성의 발달을 억압할 수 있으며, 독선적 편견을 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듀이는 "종교로부터 해방된 종교적인 것"⁵⁾을 제창하며 종교교리나 전통에 대한 교육을 반대하였다.

듀이는 그 대안으로 '공동의 신앙(common faith)'이라는 새로운 종교교육 이념을 제안하였다(Dewey, 1934: 9-12). 그것은 "특정 종교나 교리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을 보다 풍부하게 하는 이상에 대한 태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경험의 질로서의 종교란 심미적, 과학적, 도덕적, 정치적, 사교적 우정 등 모든 경험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인간의 생활 영역에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아름다움, 착함, 성스러움, 올바름, 경건함 등의 경험을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질(the quality of experience)'은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적 삶에서 성스러운 신적인 상상력(divine imagination)을 불러일으킬 수

이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고,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그것은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써 위대하고 아름답고 의미 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경건한 태도로 기도하고 사랑하게끔 되는 것이다(Jung, 1961: vol. 11, 4). 융의 종교 심리학은 도그마 형태로 변화된 종파적 종교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의 선형적 종교에서 출발한다. 종교를 특정 교의를 믿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어떤 무엇에 공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포괄적 자세라고 보는 것이다. 융의 종교론에 대해서는 줄고, 종교적 심리의 공동 원형론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1995) PP.93-114 참조.

4) "A religion always signifies a special body of beliefs and practices having some kind of institutional organization, loose or tight. In contrast, the adjective 'religious' denotes nothing in the way of specifiable entity, either institutional or as a system of beliefs." --- "But 'religious' as a quality of experience signifies something that may belong to all these experiences"(Dewey, 1934: 9-10).

5) "Here lies one aspect of the emancipation of the religious from religion."(Dewey, 1934: 27).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 듀이에 있어서의 종교란 전인적 감격으로 삶을 목적과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이며 그러한 정서였다. 종교를 이러한 이상을 향한 태도의 하나로 정의한 듀이의 종교론은 인본적 실용주의 종교론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에 대한 세 입장은 미국의 각 주와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 온 주요한 종교교육의 원리가 되었다.

3. 미국의 헌법정신과 종교교육 관련 판례

이민 초기의 미국 학교교육은 개신교가 중심이 된 종교단체에서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학교교육 과정에 종교 과목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 전쟁 이후 종교의 자유가 미국의 헌법 정신으로 선언되면서부터 학교교육과 종교는 분리되기 시작했다.

1791년에 확정된 미합중국의 연방 수정 헌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은 종교에 대한 조문이 있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국교를 수립하거나 신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⁶⁾ 이 조항은 정치와 종교의 완전 분리와 신교의 자유의 절대보장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여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⁷⁾ 이와 같이 종교에 관련된 미국의 헌법정신은 종교다원주의와 자유주의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종교와 정치분리의 원칙과 정치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⁸⁾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나 사회가 종교와 관련없이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었다.

6)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7) 미연방헌법 수정 1조의 규정을 Brubacher는 “이러한 헌법 조항은 미국이 반종교국가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형이상학적 신학적 신념은 심오하고 융화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원성을 인정한 것이다. 종교적 정통성을 지키게 하면서도 정치적 획일성으로 이를 침해할 위험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Brubacher, 1971: 83). 이것은 다양한 민족과 여러 종교와 종파가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불가피한 입법 조치였다.

8) 종교에 관련된 미국의 헌법정신은 (1) 世俗主義, (2) 複數主義, (3) 民主主義, (4) 人本主義의 바탕위에서 수립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안기성, 1978: 5-6).

오히려 초기의 미국 사회는 퓨리탄(Puritan)을 중심으로한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교육도 종교 단체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것이다. 종교는 교육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였다(Johnson, 1969: 152). 이러한 종교와 정치, 종교와 교육의 유착 관계는 그리 쉽게 단절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미국의 헌법 정신에 따라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완전히 분리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789년에 제정된 교육법과 1826년에 제정된 종교교육에 대한 법률⁹⁾에 의하면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종교교육을 할 수 없으며 각종 종교교육교재 사용도 금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법은 각주에서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미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책임은 각 주에 있기 때문에 각 주의 협조 없이 연방정부의 시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웠던 것이다.¹⁰⁾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와서 보편적 공공 교육의 개념이 생기고 공교육은 비종파적 민간 기구 시민의 권위 기관에 의해 통제되었다. 버지니아 주의 토마스 제퍼슨이나 뉴욕 주의 호레이스 만과 같은 교육가의 제안은 점차 의무 교육법의 실시와 함께 모든 주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 헌법상 종파 교육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학교 종교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려고 한 것도 사실이었다.

연방의 각주에서 시행되어 왔던 교육제도와 종교와 관련된 일들은 연방헌법의 수정 1조의 ‘국교 설립’이나 ‘종교자유’ 조항, 그리고 ‘정당한 법 절차’(수정헌법 5조)나 ‘법의 평등한 보호’(수정헌법 14조) 등의 조항과 상치될 때 법정에서 그 시비에 대한 판결을 구했다. 헌법 조항 중 ‘종교의 설립(establishment of religion)에 관한 금지’ 조항이 교육에 연관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의 개인에 대한 종교교육이나 기도, 종교 상징, 종교에 대한 시험 등의 문제였다. 미국의

9) 이 외에도 Northwest Ordinance 법(1789년), Morrill 법(1862년),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1965년), The Higher Education Act(1965년) 등이 제정되었다.

10) 연방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에 가장 충실한 주의 교육법으로는 아리조나주의 교육법으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학교에서의 종파적 또는 초월적인 저서를 사용하거나 종파적 교리나 행위를 가르치는 교사는 비전문적 행위에 따른 유죄가 인정되며 그 교사의 교사자격증은 취소된다.”(Arizona Revised Statutes, Title 15. Education: 15-203)

종교 교육사에 있어서 주목해야할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학교와 종교교육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수정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미국의 종교교육의 실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¹¹⁾

헌법 조항 중 ‘종교의 설립(establishment of religion)에 관한 금지’ 조항이 교육에 연관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의 개인에 대한 종교교육이나 기도, 종교 상징, 종교에 대한 시험 등의 문제였다. 헌법 조항 중 ‘종교의 설립(establishment of religion)에 관한 금지’ 조항이 교육에 연관되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교에서의 개인에 대한 종교교육이나 기도, 종교 상징, 종교에 대한 시험 등의 문제였다.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가 최초로 미국의 대법원에서 심리된 것은 1948년 맥콜럼(McCollum)과 일리노이주 교육 캠페인 위원회간의 소송 사건이었다. 법에 의한 종교교육 금지 조치와 함께 개신교 교육에 대한 카톨릭 학부모의 반대 때문에 정규 교과 외 시간의 종교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한 곳은 인디애나 주였다. 그 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도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맥콜럼 소송의 배경이 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사건은 이미 여러 주에서 일반화된 사례의 하나였다. 1940년, 일리노이주의 개신교와 카톨릭과 유대교의 관계자들이 모여 종교교육 캠페인 협의회를 만들고, 주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공립학교의 정규 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학기초에 교사는 학부모에게 서신을 보내 학생이 종교 과목을 수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승낙을 받게 하였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은 개신교와 유대교와 카톨릭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교실에서 종교교육을 받게 하였다. 여기에 드는 경비 는 지역 종교 협의회에서 부담하였으므로 학교에는 아무 부담이 없었다.

연방 최고 법원은 이 종교교육 사례는 수정 헌법의 종교 기관 설립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이러한 형태의 종교 교육이 자발적인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을 종교에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

11) 여기에 인용한 판례는 Leo Pfeffer(1987). *Relig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 Encyclopedia of Religions. Vol. 12*, pp.475-485를 중심으로 하고, 이외에도 Tribe, Lawrence H.(1978). *American constitution law*. New York: Mineola; Johnson, George M.(1969). *Education Law*.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Brubacher, John S.(1971). *The courts and higher education*, Jossey Bass 등을 참조하였다.

재, 이 프로그램은 국가의 의무교육 제도에 의존하여 그 제도 안으로 종교교육을 통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962년 뉴욕 주의 엘젤사건(Engel v. Vitale)은 초중등 공립학교에서의 성경 봉독, 학교 차원의 기도문 암송, 십자가나 10계명 등의 종교 상징의 부착 등도 헌법의 위반이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에는 비종파적 중립적 기도문의 암송도 포함된다.

그러나 1952년 조라크(Zorach v. Clauson)의 심리에서 법원은 방과후의 학교 시설 이용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종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아니고 공공 자금의 사용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국교의 설립이나 신교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조라크의 경우는 오직 방과후의 종교 활동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1951년 미국의 국가 교육 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종교적 중립과 함께 종교적 가치의 선택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재 천명하였다. 즉 학교교육은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주요 내용으로 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종교교육과 분리되지만 종교의 궁극적 가치는 이 세계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편 뉴욕 고등교육 평의회는 공립학교 체제 내에서도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을 장려하였다. 이 평의회는 개신교와 카톨릭과 유대교 등 유신론적 종교 신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비종파적 기도문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우리는 당신에 의지함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축복과 은총을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나라에 늘 내려 주소서.”¹²⁾ 이 평의회는 이 기도문을 의무적인 것은 아니나 매일 공립학교에서 사용할 것을 장려하였다. 뉴욕 고등교육 평의회가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미국인들은 항상 종교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케이스는 1962년 엘젤(Engel v. Vitale) 심리에서 위헌으로 판시되었다. 그 이유는 비록 이 기도문이 종파적 중립성과 자발성을 띠고 있지만 수정 헌법 1조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 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종교 의례의 실시는 종교나 기도

12) “Almighty God, we acknowledge our dependence upon Thee, and beg Thy blessings upon us, our parents, our teachers, and our country.”

에 대한 적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63년 아빙턴 교육구(*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심리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매일 '주기도문' 암송과 성경 봉독회에 학생의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성경의 문학적, 역사적 가치를 객관적 연구하는 것이나 세속 교육의 프로그램의 일부로 되어 있는 종교예술이나 음악의 교육은 국교 설립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부인하였다. 연방 최고 법원의 입장은 정부는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1980년 스톤(*Stone v. Graham*) 케이스는 켄터키주 법령은 주 내의 각 공립학교에 교실 벽면에 '10계명'을 부착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심리였다. 이 법령의 의도는 결코 비종교적인 도덕적 의도라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전반부는 신에 대한 예배, 우상 숭배 금지, 안식일의 준수,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등의 종교적 의무에 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이다.

1968년 에퍼슨(*Epperson v. Arkansas*) 케이스는 학교 교과과정에서 종교적 동기로 세속적 교과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한 심리였다. 최고법원은 인간이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되었거나 퇴화되었다는 이론이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한 것은 국교 설립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4. 종교교육의 필요성 문제의 재대두와 전망

미국의 공교육제도 내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에 대한 해법은 헌법정신에 입각한 종교적 가치 판단의 중립성 견지라는 입장과 각 개인의 종교의 자유 선택 존중이라는 선에서 조정하려는 노력으로 일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립된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중립성, 종교교육이 완전히 분리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교육의 분리는 또 새로운 문제의 제기와 함께 그 필요성도 다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미국의 식민지 시대와 건국 초기에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도를 중심으로 한 이후 아프리카인, 토착민, 아시아와 세계 각 민족의 이민으로 더욱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사회가 되었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종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인간

의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도 종교에 대한 역사와 지식 교육이 필요해졌다. 공교육이 지닌 통합적이고 융해적인 역할에 대한 요청에 알맞은 비종파적 종교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종파 교육이 아닌 종교성(religiosity) 교육이나 종교적 가치관 교육은 도덕 교육이나 영성교육의 차원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그것은 미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과학주의와 실용주의의 한계성에 대한 자각,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로 인한 청소년 등의 도덕적 타락, 세속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오는 질서와 도덕의 붕괴를 저지할 교육적 대안이 다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대 미국 사회는 도덕적 황폐화에 대한 반성에서 학교의 종교적 교육이나 도덕교육의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종교는 인류문화사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자각에서 종교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이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종교 교과를 사회과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재 소개하기 시작했다(Moore, 1995:207-225).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사회과학 교과서의 내용은 종교를 교과 교육의 한 분과로 재통합을 시도하고 있다.¹³⁾ 이러한 시도는 종교의 통문화적·학제간 연구(cross-cultural, inter-disciplinary studies)의 필요성을 제고시키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의 의도는 (a) 공교육 기관에서의 종교교육 문제에 관하여 교사들이 역사적 혹은 현대의 맥락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 문제에 대해 정직하고 정확하게 발표하기를 격려하고 있다. (b)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하는 데 있다. 세계문명의 유산 가운데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종교교육은 인류 문명의 객관적 이해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종교성을 이해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 주립 대학에 종교학 강좌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를 잘 반증하는 것이다.¹⁴⁾ 이와 같이 공교육제도에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13) (1) History-Social Science Curriculum Framework and Criteria Committee, 1987. (2) History-Social Science Framework for California Public Schools Kindergarten through grade twelve. Sacramento: CA State Board of Education.

14) 1945년 하버드 연구위원회에서 간행된 “자유사회에서의 일반 교양과목”이라는 보고서에는 종교교과를 인문·사회 과학에서 종합적으로 취급되도록 하였다(Harvard Committee,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논쟁은 다시 미국의 새로운 교육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교육 제도에서의 종교교육의 교육 이념, 그리고 방법의 문제¹⁵⁾는 우리 나라의 종교교육 현실과도 유사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종교교육 논쟁에서 시사 받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본다.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종파적 종교교육이 아닌 종교에 대한 지식과 이해, 영성교육, 종교적 가치관 교육과 종교적 정조 교육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종교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긍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共同的 信仰(a common faith)’의 원형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그 교육 방법의 탐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선영(1983). 불교와 교육사회. 보림사.

박선영(1978). 존 듀우이의 종교교육관. **사대논총 1**. 동국대학교 사법대학.

1945). 즉 인문사회과학을 통합하는 학문으로서의 종교의 위상을 제고했다. 동 위원회의 ‘서구문명의 철학적 유산(Heritage of Philosophy in our Civilization)’이라는 종합 과목의 설치 취지문에는 “서구 문화는 헬레니즘, 기독교, 과학이라는 세 가지 원천에 의해 키워져 왔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함으로써 합리적 생활의 여러 개념, 지성적·조화적 질서의 세계관, 인격신 및 개인의 가치에 대한 신념, 실증적인 연구방법과 그 개념, 만민 평등에 관한 여러 원리 등의 이해가 진실로 용이할 것이다.”(Ibid, 211)라 지적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종교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Welch Claude(1971), *Graduate Education in Religion: A Critical Appraisal*(Missoula, MT: University of Montana) 참조.

- 15) 한국의 공교육과 종교문제에 대한 연구로는 李恩奉(1987),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 국제크리스찬 교수협의회 편, 학문과 종교, 도서출판 주류; 정진홍(1986), 공교육과 종교교육, **종교연구 2**; 박선영(1983), 불교와 교육사회, 보림사; 안기성(1987), 교육법상 정교분리 원리, 국제크리스찬 교수협의회 편, 학문과 종교, 도서출판 주류; 윤이홍(1986), 다종교문화 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 등 참조.

정진홍(1986). 공교육과 종교교육. **종교연구 2**.

정진홍(1989). 종교교육의 실태.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IV). 정신문화연구원.

김중서(1989). 종교교육 실태분석. 철학종교사상의 제문제(IV). 정신문화연구원

이은봉 (1987).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 국제크리스찬 교수협의회 편. 학문
과 종교. 도서출판 주류.

안기성(1978). 미국의 공교육제도와 종교교육에 대한 일고찰. **고대 사대논총 3**.

안기성(1987). 교육법상 정교분리 원리. 국제크리스찬 교수협의회 편. 학문과 종교.
도서출판 주류.

김용표(1995). 종교적 심리의 공동원형론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 한국종교
교육학회.

전영배(1990). 외래사상과 민족문화: 종교 · 사상교육. 보문출판사.

이충원(1985). 호레스 만의 생애와 교육사상. 배영사.

Karabel, J. & Halsey A. H.(1984). 최희선 역. 교육의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 교
육과 과학사.

Moore, Mary Elizabeth M.(1995). The myth of objectivity in public education: Toward
the intersubjectivity teaching of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Vol. 90-2*

Dale, Robert L. Van(1985). Religious values and secular humanism in schools. *Religious
Education Vol. 80-1*.

Pfeffer. Leo(1967). *Church, state, and freedom*. Boston: Rev & Enl.

Pfeffer. Leo(1989). Religio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 *Encyclopedia of
Religions. Vol. 12*.

Tribe, Lawrence H.(1978). *American constitution law*. New York: Mineola.

Sealey, John(1985).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George
Allen & Unwin.

McCluskey, Neil Gerald(1958). *Public school and moral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Dewey, John(1934). *A common faith*.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Allen, Mathews F.(1985).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Disability and possibility.
Religious Education Vol. 80-1.

- Nolan, Elizabeth H.(1992). Religious education in public schools: Dealingwith diversity in spiritual traditions at the Chalkface. *Religious Education Vol. 87-4.*
- Yab, Iris M.(1993). Teaching in the language of religion. *Religious Education Vol. 88-2.*
- Jung, Carl Gustav(1954-79).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1954-79)* Ed. William McGuire, Bollingen Series 20. 20 Volumes. tr. R. F. G. Hul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1 edition.
- Jung, Carl Gustav(1965). *Memories, Dreams, Reflections.* Aniela Jaffe, ed. New York: Vintage.
- Johnson, George M.(1969). *Education law.*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Brubacher, John S.(1971). *The courts and higher education,* Jossey Bass.
-